

#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342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6년 8월 12일
-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 2. 제안이유

- 가. 효창운동장은 국내 최초의 축구 전용구장으로 건립되어 아마추어 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경기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효창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전문단체(서울시 축구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바,
- 나. 2016년 12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4회차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현황

- '09. 7. 1 ~ '11. 12. 31 : 신규 민간위탁(서울시 축구협회)
- '12. 1. 1 ~ '13. 12. 31 : 재계약(서울시 축구협회)
- '14. 1. 1 ~ '16. 12. 31 : 재계약(서울시 축구협회)

### 3.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위탁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길 84-2
  - 규모 : 대지면적 29,976㎡, 경기장 면적 16,068㎡(관중석 15,194석)
- 위탁기간 : 3년 예정('17.1.1~'19.12.31)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위탁(시설 사용료 부과)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경쟁입찰)

#### 나. 주요 위탁사무 : 효창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경기장 사용허가, 질서제도, 매·수표, 청소, 주차관리 등
- 사무공간, 식당 등 임대유치 및 운동장내 광고권의 관리·운영
- 시설·장비·비품 유지관리 및 기기 운전
- 기타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효창운동장은 아마추어 축구경기 및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체육·문화공간으로,
-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활성화 및 체육진흥 도모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위탁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효창운동장이 축구경기 및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체육·문화공간으로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 효창운동장 현황

- ①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84-2(효창동 3번)
- ② 시설규모 : 축구장 1면, 육상트랙(360m, 비규격)

준공	경기장 면적	건축연면적	좌석수	수용인원	비고
'60.10.12 ('83.8월 천연잔디 → 인조잔디로 교체)	16,068㎡	3,224㎡ (지하1층, 지상2층)	15,194석	18,000명	주차면 : 70면

※ 인조잔디는 '08.12월 재조성 후 '15.3월 전면교체(소요비용 638백만원)

- 효창운동장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2009년 ‘서울시축구협회’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수탁자로 선정되어 2년 6개월간 운영한 이후 2번의 재계약에 의해 운영해 오고 있음.

※ 효창운동장 민간위탁 현황<sup>1)</sup>

구분	위탁기간	업체명	위탁료(단위:백만원)	지원금액	비고
효창 운동장	'09.7.1~'11.12.31 (2년 6개월)	서울시 축구협회	105(연평균)	해당없음	공개경쟁입찰
	'12.1.1~'13.12.31 (2년)	서울시 축구협회	139(연평균)	해당없음	재계약
	'14.1.1~'16.12.31 (3년)	서울시 축구협회	137(연평균)	해당없음	재계약

- 다만, 이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4항<sup>2)</sup>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재계약)이 가능하였으나,
- 2015년 7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개정 및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신설에 따라 효창운동장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불가능해진 것임.
- 효창운동장 민간위탁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계획임.

1) 2,3회차 민간위탁시 공유재산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민간위탁조례 제12조(재계약), 체육시설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에 의거 기관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축구협회와 재계약(공유재산법 개정전)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위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위탁 운영 방안

### ○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기준), 제8조(수탁기관선정)

### ○ 위탁사무 : 효창운동장 시설의 운영·관리

###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 (3년)

### ○ 위탁금액 : 평균 97백만원('17년 94백만원/'18년 97백만원/'19년 100백만원)

### ○ 업체선정 : 공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법인으로  
체육의 활성화 및 공공시설로서의 공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유사경력이 있는 단체(법인)

### ○ 제안서 평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에  
의거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및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학계, 업계) 및 관계 공무원 등 6~9명 이내

## 나.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검토

- 효창운동장은 우리나라 최초('60.10.12. 준공)의 축구전용 경기장으로써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고, 현재도 각종 초·중·고 축구리그 개최 등 아마추어 축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규모의 축구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전용 구장은 상암월드컵경기장, 잠실주경기장 및 효창운동장 정도이며, 상암월드컵경기장과 잠실주경기장이 프로축구

위주의 경기장인 반면 효창운동장은 동대문운동장 철거('07.12) 이후 축구계에 대체구장 성격의 경기장이므로 일반행사 보다는 축구경기 위주로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어 아마추어 축구경기장으로서의 의미가 큰 체육시설임.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기준<sup>3)</sup>을 보면 체육경기보다 문화행사나 일반행사시 대관료가 높아 일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 수익증대를 위해 축구경기가 아닌 각종 콘서트, 뮤직페스티벌, 스포츠 관련 행사와 같은 문화행사와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일반행사 위주로 대관하거나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지나친 수익추구로 효창운동장의 역사성 및 상징성을 훼손하고 전문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전문체육단체가 아닌 곳에서 운영시 아마추어 축구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단체에서 운영시에 보다 의미있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시설 관리의 전문성 결여로 인조잔디 등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어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구경기장인 효창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 관련 전문단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경기장 사용허가, 시설관리, 질서제도, 운동장내 광고권의 관리·운영, 시

3) 체육시설 조례상 사용료(1일기준) : 체육경기 120,000~156,000원/ 체육행사 180,000~234,000원/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288,000~374,400원

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의 발전 등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효창운동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운영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활성화 및 체육진흥 도모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 다. 종합의견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최초의 역사성이 있는 축구전용 경기장으로서 프로 축구가 아닌 아마추어 축구경기장으로서 전문 경영 노하우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체육관련 전문 단체에 효창운동장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참고자료

1. 효창운동장 관련 3년 결산금액(시설비)

- 2014년도 : 12백만원
- 2015년도 : 638백만원
- 2016년도 : 131백만원(10월 집행예정)

2. 효창운동장 연차별 시설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계	3,181	781	-	1,800	600
시설비	3,181	781	-	1,800 (시설개보수 3억) , 전국체전관련 타워조명등 교체, 전광판 교체 15억)	600 (시설개보수, 기계보수, 음향 통신보수)

3. 효창운동장 인력현황 : 총 11명 (용역1명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

- 일반직(4명) : 행정업무 처리
- 기능직(6명) : 소장1, 경비2, 미화2, 시설관리
- 용역(1명) : 전기관련 용역

4. 주요대회 개최 현황(2015년)

대 회 명	대회기간	대회 주관	비 고
WK리그	연중	한국여자축구연맹	서울시청 아마조네스 홈구장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연중	문체부, 교육부, 대한축구협회	
U리그(대학리그)	연중	대한축구협회	
서울시장기 축구대회	7월~9월	서울시체육회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
협회장배 축구대회	10월~11월	서울시축구협회	초등, 중등, 고등



##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전후 비교

구분	개정전	개정후
<p>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 행령 제19조(관리위탁행정 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제3항 &lt;개정 2015.7.20.&gt;</p>	<p>“<u>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갱신할때마다</u>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 탁을 받은자의 <u>관리능력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u>”</p>	<p>“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 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p>
<p>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 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 에의할수있는 경우) 제1항 [본조신설 2015.7.20.]</p>	<p>&lt;신설&gt;</p>	<p>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li> <li>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 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지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 위를 정한 경우</li> <li>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li> </ol>